

[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]

[심사 보고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4. 1. 7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9.

다. 상정일자 : 2004. 1. 15.

(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4 - 6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○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에 따른 수거체계 구축과 처리 수수료 부과·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지역 지정(안 제4조)

- 대상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함

-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“별표1”과 같음

- 수집·운반·재활용기 및 수거일, 배출장소 등은 따로 정함
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(안 제5조)
 -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도 가능 함
 - 감량의무사업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토록 함
 - 감량의무사업자가 자가 처리하는 경우 건조처리 시에는 수분 함량을 25% 미만으로 발효(퇴비화, 사료화 등)시에는 40% 미만 으로 함
-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, 재질 규정(안 제9조)
 -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준함
-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: “별표2”와 같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제6조 (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) -----37P
 -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신고자, 또는 폐기물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· 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재용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수거 및 운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-----44P
 -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산정 기준 설명 필요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시책에 따른 수거체계 구축과 처리수수료 부과·징수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